

## 변경 대비표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 다이나믹코리아30 연금저축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
□ **변경 사항**: ①제7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②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**효력발생일**: 2020.6.2.

□ **변경 내용**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<b>요약정보</b>			
투자비용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보수 기준일 기재	-	<u>2020.4.25 기준</u>  <u>2020.3.31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4.25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0.4.30 기준</u>
<b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0.4.30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 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0.4.30 기준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표준편차 : 1.82%	<u>표준편차 : 3.28%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4.25 기준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, 연	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, <u>가목</u>



<p>나. 과세 2)연금저축계좌 가입자 에 대한 과세</p>	<p>1,800 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 입액 포함)</p>	<p><u>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</u> <u>가. 연 1,800 만원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u> <u>나.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의 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“전환금액”) 중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</u></p>
	<p>공제제도 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 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 는 금액을 세액공제 - 종합소득금액 4,000 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,500 만원 이하(근로소득 만 있는 경우) 일 경우 15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-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 만원 초과)하는 경우 연간 저축금액 중 300 만원 한 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 액을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 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 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</p>	<p>공제제도 [별첨]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중 공제제도 참 조</p>

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※ 지방소득세 별도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04.25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04.25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04.25 기준</u>
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0. 3. 31 기준</u>	<u>2020. 4. 30 기준</u>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[별첨]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중 공제제도

종합소득금액 (총 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
4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400만원	600만원	15%
1억원 이하 (1.2억원 이하)	(700만원)	(900만원)	12%
1억원 초과 (1.2억원 초과)	300만원 (700만원)		

※ 지방소득세 별도

※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기한 및 적용제외 대상

- 적용시기 : 2020.1.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- 적용기한 : 2022. 12. 31.
- 적용제외 대상 :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.2억원 초과자  
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(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)

